

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5. 3. 21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3월 14일 ·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3월 14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14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 -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(2005. 3. 21) 상정 · 보류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재무국장 김연수)

- 가. 제안이유
 -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법률로 전문개정(2005.1.14 법률 제7335호) 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- 나. 주요골자
 - 가. 현행 조례 제명 “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종로구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”로 변경함.
 - 종전의 “토지평가위원회”의 명칭을 “부동산평가위원회”로 변경하고, 인용법령 제명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(안 제1조).
 - 종전에는 “토지 및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자”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촉하였으나, 토지 뿐만아니라 주택분야의 이론을 전공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있게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3조).
 - 위원의 임기를 현행 “2년”에서 “3년”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전문성을 기하려는 것임(안 제5조).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 疑 及 答 辯 要 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

- 이종환 위원의 심사보류안 동의

6. 審査保留案의 要 旨

- 종전에는 토지만을 평가하여 왔으나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주택분야의 가격결정 및 가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이며,
- 또한 개정된 상위법령 내용을 살펴보면, 구청장은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·공시하도록 되어 있고,
- 공시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로 제공함은 물론, 국가,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폭 넓게 활용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
- 앞으로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 보류함.

7. 審 査 結 果 : 심사보류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로 가결함)